

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

•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2. 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)

가. 제정이유

○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○ 시장의 책무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
○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○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○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다. 관계법령

○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제고 및 지역 에너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, 특히, 포항시가 2025년 12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상황에서,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 차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